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용어 및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67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용어 및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7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숙련기술전수자라는 용어는 산업 일반 종사자의 단순 기술 전수와 구분이 어려워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련기술전수자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대한민국 명장은 국가가 인정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이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임. 이들을 선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숙련된 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숙련기술장려금 지급은 매우 중요함.

숙련기술장려금은 명장들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기술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이들은 또한 사회

적 귀감이자 롤모델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이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고의 숙련기술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기술 직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8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다른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 올림픽 입상자들에게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대한민국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용어 및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용어를 현행 ①‘숙련기술전수자’, ②‘숙련기술전수대상자’, ③‘계속종사장려금’에서 각각 ①‘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②‘대한민국숙련기술전수대상자’, ③‘숙련기술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숙련기술장려금(現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u>숙련기술전수자</u> 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 -----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
② 제1항에 따라 <u>숙련기술전수자</u> 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숙련기술전수대상자</u>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	②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 ----- ----- -----

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 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및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

-----.

-숙련기술장려금-----

-----.

④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및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숙련기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계속종사장려금</u> 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숙련기술장려금</u> 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 등에 따르면,¹⁾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분야 등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고,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

1)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등의 분야
2.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²⁾

이에 현재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³⁾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대한민국명장은 기계설계, 금형, 공예, 조리 등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며,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선정된 자임.⁴⁾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행사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음.⁵⁾

2)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후단생략)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계속종사장려금은 지급 대상과 종사연수에 따라 연 최소 215만원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됨.

[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기준

1. 계속종사장려금(명장)

(단위: 천원)

종사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금액	2,150	2,260	2,360	2,470	2,570	2,680	2,790	2,890	3,000	3,100
종사연수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액	3,200	3,290	3,390	3,480	3,580	3,670	3,770	3,860	3,960	4,050

2. 계속종사장려금(국제대회)

(단위: 천원)

종사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금	9,500	9,790	10,060	10,330	10,620	10,890	11,180	11,440	11,710	12,000
은	7,160	7,380	7,560	7,760	7,960	8,180	8,380	8,590	8,780	9,000
동	5,050	5,190	5,330	5,470	5,600	5,750	5,890	6,020	6,170	6,300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현행 ‘숙련기술전수자’라는 용어는 산업 일반 단순 기술 전수와 구분이 어렵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8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체육 올림픽 입상자들에게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현행 사용되는 용어를 ①-1 ‘숙련기술전수자’에서 ‘대

5)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한국숙련기술전승자’로, ①-2‘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서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로, ①-3‘계속종사장려금’에서 ‘숙련기술장려금’으로 변경하고, ② 숙련기술장려금(現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명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종에서 계속 종사해야 지급하는 것에서 계속 종사 요건을 삭제하고, 대한민국명장이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이기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용어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숙련기술전수대상자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
	계속종사장려금	숙련기술장려금
숙련기술장려금 (現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요건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 2. 해당 직종에서 계속 종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먼저 용어 변경에 대하여, 현행법이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숙련기술전수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명장 등이 해당 직종

에서의 계속 종사를 통해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전수대상자’, ‘계속종사장려금’을 각각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대상자’, ‘숙련기술장려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계속종사장려금은 그 취지가 대한민국명장 등이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여 숙련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용어를 해당 직종에서의 계속 종사를 장려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지급요건을 함께 변경하여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장려금 지급요건 변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가 인정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이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이므로 이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기술 우대 풍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체육인 복지법」⁶⁾이 체육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숙련기술장려법」⁷⁾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

6) 「체육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

적 인식을 제고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숙련기술장려법」⁸⁾은 숙련기술자에게 산업발전 이바지와 적극적인 전수활동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종사 요건을 삭제한다면 숙련기술인에게 부여된 책무 이행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현행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용어 변경에는 이견이 없으나,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연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숙련기술의 향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숙련기술장려법」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체육인 복지법」은 입법 목적에 차이가 있고, 숙련기술장려금 지급대상인 명장은 이미 산업현장에서 경력 15년 이상으로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인정된 자이고,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는 참가연령이 만 22세이하로서 평생 해당 산업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이 예상되고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에서 체육인과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숙련기술장려법」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생략)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4년 9월까지 선정된 명장은 총 708명이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총 640명임.

[표] 연도별 명장 선정 현황

(단위: 명)

구분	'86-'19	'20	'21	'22	'23	'24.9월	계
대한민국명장('86년 최초 선정)	636	13	11	19	16	13	708

※ 자료: 고용노동부

[표] 연도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대회별	참가직종(인원)	메 달 수 (인원)			
			계	금	은	동
계		1,052(1,048)	640(636)	332(339)	175(164)	133(133)
'67	16	9	5(5)	2(2)	1(1)	2(2)
= 중 략 =						
'17	44	42(46)	24(27)	8(9)	8(8)	8(10)
'19	45	47(52)	15(16)	7(7)	6(7)	2(2)
'22	46	46(51)	28(31)	11(12)	8(9)	9(10)
'24	47	49(57)	32(35)	10(12)	13(14)	9(9)

※ 자료: 고용노동부

문 의 처
02)6788-5538